

[부칙 제3조(대회사용구, 배트) 시행세칙]

# 대회사용구, 배트

## 제1장 대회사용구

**제1조(공인)** 대회사용 공인구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업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인제조 판매업자로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조(적용 및 의무)

1. 본 규정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사용되는 대회사용 공인구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는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한 대회사용 공인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한다.

### 제3조(공인의 신청)

#### 1. 공인신청조건

공인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취급하는 제품이 제5조(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위탁 생산의 경우 공인구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해외 공장으로부터 위탁 생산할 경우, 수입 후 15일 이내에 세관 직인이 날인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신청절차 : 전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즉시 공문으로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가. 공인신청공문

나. 대회사용구 공인신청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라. 공장등록증 사본(위탁 생산의 경우 제외)
- 마. 공의 상세 제조공정(사진 및 설명 첨부)
- 바. 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원산지 포함) 및 단가
- 사. 모델별 협회 납품 가격표
- 아. 모델별 견본 2타(내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개 구 1개 포함)

<위탁 생산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가. 위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나. 위탁 또는 납품 계약서 사본
- 다. 위탁 회사의 전년도 생산 실적
- 라. 위탁 회사의 공장등록증 사본
- 마. 위탁 회사의 공장책임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제4조(인정의 기준)** 협회는 제3조에 따라 신청된 공이 제5조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신청자를 공인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제조기준)**

-야구-

1. 신청한 공의 반발력이 반발 측정기구에 의한 검사결과 그 평균반발 계수가 0.4134에서 0.4374이내이어야 한다.
2. 공의 고무심은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의 솔기폭은 16분의 6인치, 실밥 수는 108이어야 한다.
4. 공의 둘레길이는 중·고등용은 9인치~9¼인치(229mm~235mm), 초등용은 8¾인치~9인치 미만(222mm~228mm) 이어야 한다.
5. 공의 중량은 중·고등용이 5온스~5¼온스(141.7g~148.8g), 초등용은 4¼온스~5온스 미만(134.6g~141.7g) 이어야 한다.

6. 전기 각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는 야구규칙의 일반규칙을 적용한다.
7. 공인구의 양모 함유량은 고교·대학 100%, 초등·중학·동호인은 50%(생산 과정 중 10% 이내의 오차 범위 인정)로 한다.

-소프트볼-

1. 공의 중심은 섬유질로 된 솜, 코르크의 혼합, 고무, 폴리우레탄 혼합 등의 재질이어야 하며, 공의 겉면은 말가죽, 소가죽, 합성재질이어야 한다.
2. 공의둘레는 305mm(12inch)이며, 3mm의 오차(302mm~308mm)는 허용한다.
3. 공의 중량은 178g에서 198.4g이내여야 한다.
4. 공의 색상은 흰색 또는 노란 형광색이어야 한다.
5. 실밥의 색상은 흰색 또는 빨간색이어야 하며, 실밥 수는 최소 88개 이상이고 2열로 박음질되어 있어야 한다.
6. 공을 0.64cm 압축할 때 요구되는 하중이 경식볼(150kgf~170.1kgf), 연식볼(10kgf 이내) 이어야 한다.

※공인구 협회 각인 (예시)

- 협회 로고 각인
- 글씨체 : HY견고딕



★OFFICIAL BALL★

KBSA

**제6조(수시검사)** 협회는 제5조(제조기준)에 의거 공인구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시 검사는 최초 공인 신청 시 제출한 샘플을 기준으로 하며, 협회 공식 전국대회에 납품된 대회사용 공인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 채취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검사 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나, 문제 발견 시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비용은 공인제조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제7조(공인제조판매업자의 의무)**

1. 공인제조판매업자는 1년마다 협회가 정한 기한 내에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인제조판매업자는 협회로부터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본 협회가 정하는 공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인제조판매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인제조판매업자는 제품의 하자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공인제조판매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공정 및 공인구에 대한 수시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제재)**

1. 본 협회는 공인제조판매업자가 신청한 대회사용구가 상기 제5조의 제조 기준 및 제7조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인을 취소한다.
2. 공인제조판매업자가 의도적으로 제조를 중지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인을 승인 받았을 경우, 공인을 취소한다.
3. 제6조에서 정한 수시 검사의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협회는 공인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에 의거, 제재를 결정하여 해당 공인 제조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1) 공인 신청 시 규정 위반의 경우
    - ① 1차 적발 시 : 재시험 의뢰
    - ② 재시험 의뢰 결과, 불합격 시 : 당해 연도 공인신청 자격박탈

2) 시준 중 수시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의 경우

① 1차 적발 시 : 제재금 1천만원이내

② 2차 적발 시 : 공인 취소

4. 해당 공인제조판매업자는 공인심사위원회의 제재 결정(제재 및 벌금부과)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5. 포장 상태 불량, 협회가 요구하는 표시 의무(원산지, 제조일자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제재한다.

6. 기타 부정한 방법(협회 임·직원 결탁 및 금품 제공 등)으로 공인 승인 절차를 진행 또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공인 제조 판매업자의 공인을 즉시 취소하고 상기 4항의 제재를 받는다.

7. 공인을 취소당한 공인제조판매업자는 공인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인심사위원회 제재 결과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시점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에 본 협회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이의 신청)** 공인심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대하여 해당 공인제조판매업자는 제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인의 효력기간)** 공인의 효력 기간은 본 협회의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당해 연도로 한다.

## 제2장 배트 (목재, 비목재)

**제1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트 (목재, 비목재)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함에 있다.

### 제12조(적용 및 의무)

1. 본 규정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및 비목재 배트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협회에 야구로 등록된 고교·대학 및 실업팀 선수는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된 목재배트만을 사용해야 하고 야구 초등·중학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 소프트볼 선수 및 동호인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된 비목재 배트만을 사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팀이나 선수에 대하여 징계한다.

### 제13조(공인의 신청)

1. 신청조건 : 배트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공인을 신청할 경우 제15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신청절차 : 사업자가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목재 배트

- 가. 공인신청공문

- 나. 배트(목재) 공인신청서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라. 전년도 납세 증명원

마. 국내 공장 등록증 사본

(배트가 국내위탁제조에 의한 경우는 위탁 공장의 등록증 사본)

바. 제품별 품격 현황 및 견본 각 2본(일반 1, 커프트 1)

사. 본 협회 납품 가격표

아. 배트의 제조공정의 상세한 현황(배트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 포함)

자. 사업자가 외국회사의 배트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회사에 대한 자료

차. 외국산 배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하는 국내 수입 판매자는 국내독점 판매권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혹은 국문 번역이 된 본사와의 계약서(한국 총판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에서 공인된 제품에 한한다.(원본대조필 날인, 당해연도 내용 포함)

● 비목재 배트

가. 공인신청공문

나. 배트(비목재) 공인신청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전년도 납세 증명원

마. 제품별 품격 현황

바. 본 협회 납품 가격표 및 납품현황(년도, 생산, 판매, 재고수량)

사. 외국산 배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하는 국내 수입 판매자는 국내독점 판매권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혹은 국문 번역 계약서(한국 총판권)를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당해연도 내용 포함)

**제14조(공인의 승인)** 사업자가 공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사무처가 승인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공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승인은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5조(제조 기준)

-목재-

1. 표면의 마무리 : 방습(防濕)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포가공(塗布加工)은 허용되거나 반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지(樹脂)나 기타 일질의 경화제 및 강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표면의 도포 재료는 투명(목재 고유의 색으로 흰색 불가), 빨간색과 구분되는 갈색, 짙은회색, 검은색에 한하며, 반드시 나무의 결이 보여야 한다. 또한 인가한 색 중 2가지색(투톤)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2가지색(투톤)으로 할 경우 배트의 손잡이 끝부분부터 45.7cm 이내를 경계선으로 한다. 배트의 소재가 메이플 등의 산공재일 경우 배트의 손잡이 부분에 한하여 반드시 나무의 결이 보여야 한다. 이 경우 배트의 끝부분에서 45.7cm~44.2cm를 경계선으로 한다.
3. 배트의 표면에는 배트의 모델명, 품번, 제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표시는 배트의 길이에 따라 세로 5cm 이하, 가로 12cm이하이어야 하고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2cm 이하 가로 2cm 이하이어야 한다.
4. 또한 상표 또는 기타 문자 등을 배트의 손잡이 부분 끝에서 45.7cm 까지는 표시할 수 없으나, 링은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폭은 3.5cm 이하로 한다.
5. 상기 1,2,3,4항의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야구규칙(3.02)과 본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야구규칙 3.02 주요내용

- 배트는 겉면이 고른 둥근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이 2.61인치(6.6cm) 이하, 길이는 42인치(106.7cm) 이하여야 한다.
- 배트는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접합배트는 별도의 승인없이 사용 불가)
- 커프트 배트(끝부분을 움푹하게 도려낸 방망이)는 도려낸 부분의 깊이가 1¼(3.2cm) 이하, 지름은 1~2인치(2.5~5.1cm) 이내로 해야 하며, 움푹하게 파낸 단면은 둥글어야하고, 다른 물질을 붙여서는 안되며 소재를 도려낸 것으로 그쳐야 한다.

-비목재-

1. 배트 33인치 기준 배트의 스위트 스팟(Sweet spot) 지점이라 할 수 있는 152mm에 1.21mm의 압축 후 하중 측정된 값이 아래 기준표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                  | 알루미늄   | 복합재(카본) |
|------------------|--------|---------|
| 13세이하(초등)        | 2,600N | 2,990N  |
| 16세이하(중등) / 생활체육 | 3,400N | 4,100N  |

2. 배트에 표시되어있는 사양이 아래와 같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제조되어야 한다.

- 길이 : ±0.2in (±5.1mm)
- 무게 : ±0.7oz (±19.8g)
- 배럴지름 : +1mm

3. 캡과 그립을 제외하고 배트의 기본 배럴 외에 사용자가 탈부착이 가능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된다.

4. 상기 1,2,3항의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야구 규칙(3.02)과 본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야구규칙 3.02 주요내용

- 굵기 : 2.61인치(6.6cm)이하
- 길이 : 42인치(106.7cm)이하

※ 소프트볼 배트의 경우 국제연맹(WBSC 또는 ISF)에서 인증한 배트에 한해 사용. (2020년부터 시행/ 2017년 감독자회의 요청사항)

## **제16조(공인의 효력 및 의무)**

### **- 목재-**

1. 사업자는 매년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협회로부터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본 협회가 정하는 공인료를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인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시험용 배트에 대하여 제18조의 공인 인(印)을 받아야 하며 공인 인(印)을 받은 배트는 협회와 협의된 판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배트의 공급 수량 부족 또는 불량 배트 등의 사유로 구입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적 사유로 생산량을 조절해야 할 사유가 발생 될 경우 즉시 협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 공정 및 야구 배트에 대한 수시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공인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국제대회에서의 사용을 위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에 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 **-비목재-**

1. 사업자(제작업체 또는 수입총판업체만 가능)는 공인받고자 하는 모델별로 1회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동일모델이라도 in, oz, 배럴지름이 다를 경우 모든 시험성적서 제출.

ex) 동일모델 32in/27oz, 33in/28oz 경우 각각의 시험성적서 제출

-한번 공인 받은 배트는 3년간 공인효력, 3년 이후 재공인 미 신청 시 사용 금지

2. 사업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용품시험소 테스트를 통과한 배트 시험성적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테스트 비용 사업자 부담)

3.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협회가 제공한 공인인증 마크를 부착한다.

① 공인신청 테스트 시점 기준으로 제작된 배트에 한에 스티커 부착(배트 제작 재원(수량) 제출) ② 공인 승인 이후 제작 시 공인 인(印) 각인 제작

\* 동일모델 제품일지라도 공인승인 이전 제작된 제품 사용불가(제품 제작년도 기준)

4.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 공정 및 배트에 대한 수시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인의 취소)**

1. 본 협회는 상기 제13조에 의해 신청한 배트가 제15조의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인을 취소당한 사업자는 공인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배트의 제조를 중지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인을 승인 받았을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8조(공인 마크 표시)

1. 협회는 공인사에서 제조한 배트 중 경기용 배트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협회를 상징하는 별도의 마크를 부착한다.
2. 공인 마크는 제15조에서 언급된 부분을 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공인 마크가 없는 배트를 협회 주최대회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본 협회는 해당 팀이나 선수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경기 진행(승패결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경기 규정에 따른다.

### - 목재배트

가. 국산 : 공인마크 부착필수

나. 외산 : 공인마크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가능

- 비목재배트 : 국, 외산 구분없이 스티커 혹은 배트 각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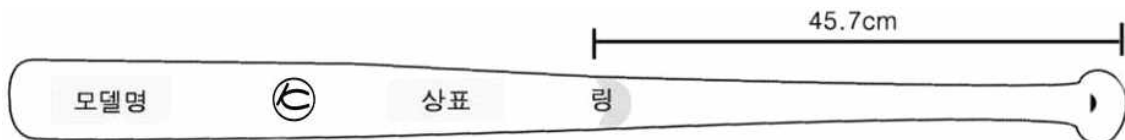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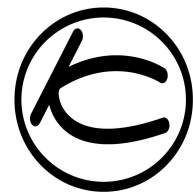
### ※ 목재 배트 공인 인(印)

- 크기 : 가로 X 세로 2.5cm

- 색상 : 상품표시와 동일한 색으로 소인한 자연색, 흰색, 은색, 금색, 검정색 중 한 가지 색으로 한다.

- 위치 : 상표로부터 배트 앞쪽(지름이 가장 굵은 부분)

으로 2cm 떨어진 지점



※ 비목재 배트 공인 인(印)

- 크기 : 가로 5cm, 세로 2cm
- 색상 : 검정색 (제공된 이미지)
- 위치 : 손잡이 부분 상단 5cm



\* 협회 공인신청을 하기 위해 테스트 기간에 제작된 배트에 한하여 스티커 제공

(공인 이후 제작 시 공인 인(印) 각인 후 제작)

\* 공인 승인 이전 제작된 제품은 사용불가 (서류제출 시 최초제작 및 수량 파악)

**제19조(공인의 효력 기간)**

1. 공인의 효력 기간은 본 협회의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당해 연도로 한다. (비목재 배트는 3년)
2. 협회의 마크가 표시된 시합용 배트에 대하여는 공인이 취소된 회사의 제품 일지라도 제19조 제1항의 기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배트의 문제로 인하여 취소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3. 취소된 공인사는 취소된 시점부터 3년간 본 협회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